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/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/팀원 박수연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0455호

시행일자 2018. 4. 1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관상동맥우회술(6차)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질환평가부-39호(2018.4.9.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73호(2017.4.24.) 「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」에 따라 관상동맥우회술(6차) 적정성 세부 추진계획을 안내요청 해온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(알림/공지사항), E-평가자료제출시스템(평가알림방(구요양포털)), 우리 협회 홈페이지(상담실/무료보험상담실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대상기관 :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입원 청구기관
○ 대상기간 : 2018년 7월 ~ 2019년 6월(1년) 입원 진료분
○ 대상환자 : 허혈성심질환(I20~I25)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환자(건강보험 및 의료급여)
  - 대동맥-관동맥간우회로조성술(O1640, O1641, O1647, O1648, O1649)
  - 무인공심폐관상동맥우회로술(OA640, OA641, OA647, OA648, OA649)
○ 주요 개정 내용
  - 지표삭제(1개): CABG 수술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
  - 평가지표⇒모니터링지표 전환: 수술 후 입원일수
  - 모니터링지표⇒평가지표 전환: CABG 수술 후 재입원율(퇴원 7일내/30일내)

○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
붙임 : 관상동맥우회술(6차) 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